

학교법인 청운학원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회의록

구 분	이 사	감 사
임원정수	9 인	2 인
재적임원	9 인	2 인
참석인원	6 인	1 인

1. 일 시 : 2018년 06월 29일(금) (오후)18:00~19:40 (회의소집통보일 : 2018년 06월 19일)

2. 장 소 : 대전 중구 대흥동 천우빌딩 4층 회의실

3. 임원 출·결 사항

○ 참석 임원

- 이사(6인) : 이여덕, 전병무, 곽상태, 진재구, 서지원, 박종일

- 감사(1인) : 김홍권

○ 불참 임원

- 이사(3인) : 성기석, 김동인, 이태용

- 감사(1인) : 박원규

4. 배석자 : 법인직원 2명

5. 안 건

①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개정(안) 심의

② 2018학년도 법인일반회계 1차 추경예산(안) 심의

③ 대전보건대학교 직원 명예퇴직(안) 심의

④ 2018학년도 대전보건대학교 1차 추경예산(안) 심의

⑤ 2018학년도 학교기업 노인요양원 1차 추경예산(안) 심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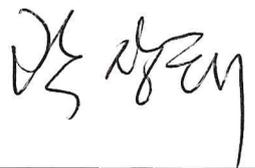
⑥ 행복기숙사 배정확정 보고(안) 심의

⑦ 기타안건

: 산학협력단 이안요양원 폐원(안) 보고

주무자는 재적이사 9명 중 이사 6명이 참석하여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성원되었음을 보고하다.

의장(이사장)은 2018년도 제3차 이사회 개회를 선언하다.

이 사 장 이 여 덕		이 사 전 병 무		이 사 곽 상 태	
----------------	---	--------------	--	--------------	---

(제1의 안)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개정(안) 심의

의장(이사장)은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개정(안) 안건을 상정하고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사립학교법 개정에 따른 기금운영심의회 및 교원 징계의 소멸시효에 대한 개정 임을 말하다. 정관 제12조의 3부터 4를 신설하였고 제62조의 2를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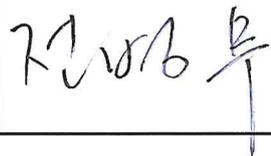
제1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등) ①학교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 법인의 이사장은 사립학교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② 기금운용심의회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③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8.06.29.]

제12조의4(기금운용심의회의의 구성)①학교법인의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장은 이사장으로 한다.

- ②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은 교원, 직원, 학생, 외부 전문가, 동문 및 학교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기금운용심의회의의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③ 정관 12조의3제2항에 따른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8조에 따른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서 자산운용 또는 위험관리·평가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기관에서 재정 또는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5항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 나.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
 - 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학문 분야를 연구하거나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4. 경제, 경영 또는 금융 관련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연구기관 또는

이 사 장 이 여 덕		이 사 전 병 무		이 사 곽 상 태	
----------------	---	--------------	--	--------------	---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5.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6.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회의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기금운용심의회 회의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운용심의회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회의 의결을 거쳐 기금운용심의회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8.06.29.]

제62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07.03.29, 16.06.01. 18.06.29.>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신설

①(시행일) 이 정관은 2018년 06월 18일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제62조의2는 상위법령(사립학교법)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8.06.29.>

②(징계사유의 시효 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6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정관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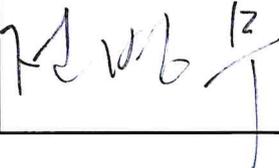
-끝-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개정(안)에 대한 서지원 이사의 발의와 박종일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정수 9명 중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학교법인 청운학원 정관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제2의 안) 2018학년도 법인일반회계 1차 추경예산(안) 심의

의장(이사장)은 2018학년도 법인일반회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대전보건대학교 행복(공공)기숙사 건립사업의 최종 승인에 따라 특수목적법인

이 사 장 이 여 덕		이 사 장 전 병 무		이 사 장 곽 상 태	
----------------------------	---	----------------------------	--	----------------------------	---

(SPC) 설립 출자를 위해 본예산 대비 총액 변동 없이 631백만원으로 추경 편성하였음을 말한다.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진재구 이사의 동의와 박종일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정수 9명 중 참석이사 6명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2018학년도 법인일반회계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제3의 안) 대전보건대학교 직원 명예퇴직(안) 심의

의장(이사장)은 대전보건대학교 직원 명예퇴직(안)에 대한 내용을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사이버평생교육원 일반행정직 5급 김재충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이 있었고 명예 퇴직예정일자는 2018년 06월 30일임을 말한다.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전병무 이사의 동의와 서지원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정수 9명 중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대전보건대학교 직원 명예퇴직(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제4의 안) 2018학년도 대전보건대학교 1차 추경 예산(안) 심의

의장(이사장)은 2018학년도 대전보건대학교 1차 추경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2018학년도 대전보건대학교 1차 추경예산(안)은 산학협력단 이안요양원의 폐원에 따른 산학협력단의 전입금 변동 및 교내서점의 위탁운영 전환에 따른 변동 반영 등으로 본예산 대비 31,998천원 증가한 72,069,416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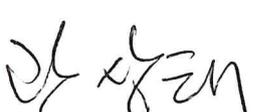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전병무 이사의 동의와 곽상태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정수 9명중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2018학년도 대전보건대학교 1차 추경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제5의 안) 2018학년도 학교기업 노인요양원 1차 추경예산(안) 심의

의장(이사장)은 2018학년도 학교기업 노인요양원 1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산학협력단 이안요양원 폐원에 따른 교비 전입금의 변동으로 본예산 대비 470,000천원 증가한 3,624,893천원으로 편성하였음을 설명하다.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서지원 이사의 동의와 전병무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

이 사 장 이 여 덕		이 사 전 병 무		이 사 곽 상 태	
----------------	---	--------------	--	--------------	---

장(이사장)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정수 9명중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2018학년도 학교기업 노인요양원 1차 추경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제6의 안)

행복기숙사 배정 확정 보고(안) 심의

이어서, 행복(공공)기숙사 건립 확정에 따른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말하다. 행복(공공)기숙사는 대전광역시 동구 가양동 89외 필지에 연면적 4,142.5m²에 지하1층, 지상6층 (수용인원 164명)(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변동 가능함)으로 건립 추진 중이며, 총 공사비 71여억원(계획변경 등으로 인해 변동 가능함)은 대학 10%,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기금 90% 부담으로 조달됨을 설명하다.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전병무 이사의 동의와 진재구 이사의 재청이 있었고, 의장(이사장)은 부의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지 질의하고, 이사정수 9명중 참석이사 6명 전원이 이의 없이 찬성하므로, 대학캠퍼스 이전 부지 추가 매입(안) 및 행복기숙사 배정 확정 보고(안)을 원안과 같이 승인하기로 의결하였음을 선포하다.

(기타안건) 산학협력단 이안요양원 폐원 보고

의장(이사장)은 기타안건-산학협력단 이안요양원 폐원을 주무자로 하여금 설명하게 하다. 주무자는 행정기관의 개선권고 요청 등의 사유로 인해 이안요양원의 사업을 종료하기로 결정(종료 예정일:2018년 06월 30일) 하였음을 설명하다.

이에 이사 간 논의가 있는 후 의장(이사장)은 산학협력단 이안요양원의 폐원에 따라 학교기업 노인요양원의 상호를 이안요양원으로 변경하고 학교 기업으로서 수익 창출과 지역 사회 공헌에 힘쓰도록 당부하다.

(기타의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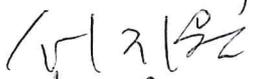
이사회이록 간서명 및 간인 대표이사로 이여덕 이사장, 전병무 이사, 곽상태 이사를 전원찬성으로 선임하다.

이 사 장 이 여 덕		이 사 전 병 무		이 사 곽 상 태	
----------------	---	--------------	--	--------------	---

7. 폐회선언

19시 40분 이상의 회의를 마치고 의장이 폐회를 선언하다.

2018. 06. 29.

학교법인 청운학원	이 사장	이여덕	(인) 
	이 사	성기석	(인)
	이 사	전병무	(인) 
	이 사	김동인	(인)
	이 사	이태용	(인)
	이 사	곽상태	(인) 
	이 사	서지원	(인) 
	이 사	박종일	(인) 
	이 사	진재구	(인) 
	감 사	박원규	(인)
	감 사	김홍권	(인) 